

인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도로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인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도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032-560-4763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7. 2. 27.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

- 결정취지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
- 위 치 :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56-64번지
- 면적 또는 규모

○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신설	소로	1	54	10	국지도로	126	가좌동 556-54 (대로2-32)	교통광장	일반도로	-	-	-

○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-	소로1-54	• 도로 신설 • 폭원(B) = 10m, 연장(L) = 126m	• 종전대지의 이용계획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신설

- 지형도면 : 게재생략(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, <http://luris.mltm.go.kr/>
열람 가능)